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  
등에관한법률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성숙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6.5.26. 공포, '26.11.2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 가능 업무 구분(제41조제1항 신설)

- 1)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,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,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

나.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(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- 1) 창업, 기술개발, 기업육성,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
- 2)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6.6.16.~2026.7.27.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

##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를 제42조로 하고,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지원
2.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 성과분석 지원
3.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
4.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
5.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·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
6.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

## 홍원

2.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
 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
  5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
  6. 그 밖에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·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 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41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 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 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법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 립 지원</u></li> <li><u>2.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 성 과분석 지원</u></li> <li><u>3.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 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 한 지원사업</u></li> <li><u>4.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</u></li> <li><u>5.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중소 기업 육성·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</u></li> <li><u>6.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 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</u></li> </ol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 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</u></li> </ol>

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 
기술정보진흥원

2.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제  
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
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 
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  
기업진흥공단

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5조  
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  
원

5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
특례법」 제4조에 따른 산업  
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

6. 그 밖에 「민법」이나 다른  
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·단  
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  
는 시·도지사가 위탁 대상 업  
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 
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 
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 2  
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 
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 
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  
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41조 (생략)

제42조 (현행 제41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572